

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(안전검토·사무보조) 근로자 채용공고

우리 위원회에서 근무할 기간제(안전검토·사무보조)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4년 1월 31일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1 채용 개요

○ 채용분야 ※ 연봉월액 :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 /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

분야	근무예정부서	소재지	채용인원	신분 (계약기간)	연봉월액 (‘24년 기준)
안전검토	행정심판국 (환경문화심판과)	세종특별자치시	1명	기간제근로자 (계약일~’24.12.31.)	3,087,000원
사무보조	심사보호국 內 부서		1명	기간제근로자 (계약일로부터 10월)	2,060,740원

○ 담당업무

구분	담당 업무
안전검토	○ (직종) 행정심판 안전검토위원 ○ (주요업무) - 행정심판 청구사건 정리, 위원회 안전 상정, 행정심판상담 - 기타 행정심판국장이 지시하는 업무(송무업무 등)
사무보조	○ (직종) 사무보조원 ○ (주요업무) - 보상사건 분류체계 점검 및 처리결과 입력 지원 - 청렴포털 반부패 분석정보 입력 및 통계 업무 지원 등

○ 근로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) 근무

○ 후생복지 : 4대보험(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) 가입

2 응시 자격

- 채용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
 -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
 - 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」 제39조에 따른 정년(60세)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)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
- 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5조 각 호에 규정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

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5조 각호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응시자격

근무부서	분야	응시자격	
행정심판국 환경문화 심판과 (세종)	안전검토	필수 요건	법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
		우대 요건	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,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, 외국의 정부기관, 국제기구 또는 국제 단체 등에 소속되어 <u>관련분야 업무법령 입안심사해석소송 등의 법률사무</u> 등 수행경력 ② <u>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</u> * 자격증 인정범위 :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사무화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,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 능력2급 * 2개 이상 소지일 경우, 높은 배점 자격증 1개만 인정
심사보호국 내 부서	사무보조	필수 요건	필수 요건 별도 없음
		우대 요건	- <u>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</u> · 자격증 인정범위 :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사무화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,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 능력2급 · 2개 이상 소지일 경우, 높은 배점 자격증 1개만 인정

※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고, 지원자 수가 채용인원의 5배수 미만일 경우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

3 채용절차 및 일정

○ 채용절차 : 1차 서류심사, 2차 면접시험

○ 채용일정(안)

채용공고 및 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	면접전형	최종합격자 발표
'24. 1. 31.(수)~'24. 2. 13.(화)	'24. 2. 15.(목)	'24. 2. 22.(목)	'24. 2. 23.(금)

※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일 : '24. 3. 4.(월) 예정

※ 채용 일정, 근무시작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1차 : 서류심사

- 응시자 제출서류(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)를 통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, 적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
-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4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(동점자 모두 합격 결정)
※ 응시자가 20명 이하일 경우 4배수, 21명 이상 40명 이하일 경우 5배수, 40명 초과일 경우 6배수 선발

○ 2차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※ 평정요소 : ① 준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근무경력 및 전문성, ③ 의사표현 능력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평정요소별 상(上)·중(中)·하(下)로,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
※ '상'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
- 위원 모두가 4개 평정요소 중 2개 요소 이상을 '하'로 평정한 경우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
-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,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
-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4 원서 접수

- 원서 교부 :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(이력서·자기소개서 등 포함)
- 접수 기간 : '24. 1. 31.(수) ~ '24. 2. 13.(화) 18:00
- 접수 방법 : 담당자 전자우편(phr0408@korea.kr)으로 온라인 제출
※ 우편·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
※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 가능, 분할·중복 접수 불가

5 제출 서류

구 분	제출 서류
공통	① 이력서 1부 : [붙임1] 서식
	② 자기소개서 1부 : [붙임2] 서식
	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: [붙임3] 서식
	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: [붙임4] 서식
	⑤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: [붙임5] 서식

구 분	제출 서류 ※심사위원에게 제공시 생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삭제하고 제공
안전검토	㉠ (필수) 법학 석사 학위증(졸업증명서) ※심사위원에게 미제공(진위 확인용) ㉡ (우대) 경력증명서 각 1부 ※ 근무 기간, 직위·직급, 담당 업무, 전임 여부, 발급자 연락처 포함 ㉢ (우대) 자격증 사본 각 1부
사무보조	㉣ (우대) 자격증 사본 각 1부

<서류 제출 주의사항>

- 가. 위 제출 서류 중 공통서류인 ①~⑤번의 경우, 반드시 **자필로 서명**해야 함
- 나. 서명한 공통서류(① ~ ⑤번)와 자격요건 관련 서류(㉠ ~ ㉢번) 전체를 순서에 따라 전체 서류를 스캔하여 **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**해야 함
- 나. 이력서에 작성한 이력사항 중 ㉠ ~ ㉢번의 서류에 의해 증빙할 수 없는 사항은 심사 시 인정되지 않음
- 다. 모든 제출서류는 응시마감일 기준 **6개월 이내**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
- 라. 이메일 제목 및 제출서류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
 - **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지원서류 제출(응시분야 자원자 성명)**

- 1)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2)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3)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응시원서·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,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4)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5)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6)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(☎ 044-200-719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자 기 소 개 서

(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)

응시 분야	☐ 기간제 근로자 (안전검토 행정심판)	☐ 기간제 근로자 (사무보조)
성명		

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
2024. . .	작 성 자 : (서명)

- ※ 지원동기, 생활신조와 가치관, 미래 전망, 성품,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, 대인관계,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
- ※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※ 휴면명조 13p 가는 글씨, 줄 간격 160%, 자간 0%로 작성(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)

직무수행계획서

(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)

응시 분야	☐ 기간제 근로자 (안전검토 행정심판)	☐ 기간제 근로자 (사무보조)
성명		

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 2024. . . . 작 성 자 : (서명)	

- ※ 채용공고에 명시된 직무분야의 담당업무와 연계하여 작성(본인이 채용예정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,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, 채용예정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)
- ※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※ 휴면명조 13p 가는 글씨, 줄 간격 160%, 자간 0%로 작성(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.

- (1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근로자 채용 및 관리
- (2) 개인정보 수집 항목(필수) : 성명, 생일, 휴대폰번호, 이메일, 주소,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·경력·자격증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
- (3)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

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

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2.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
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,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·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.

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.

(1)제공받는 자	(2) 제공목적	(3) 제공 항목	(4)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
<u>개인정보</u> <u>확인기관</u>	<u>근로자 채용</u> <u>관리</u> <u>(자격확인)</u>	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	<u>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</u> <u>(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</u> <u>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</u> <u>보유 후 파기)</u>

☞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인이 서명·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, 이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성명 : 2024년 월 일 (서명)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 명	생일 (※본인 확인용)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4. . .

성명 :

(서명)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